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필리핀,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제조, 수입, 유통 금지 (2023년 6월 19일부터)



TBT

이슈 바로가기

- 필리핀 정부는 2023년 6월 19일부터 필리핀 식품의약품 회람 번호(Circulation No.) 2021-028 「트랜스 지방산(TFA)을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지침」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가공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총 지방량의 100g 또는 100ml 당 2g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함
- 해당 지침은 일반 지침과 상세 지침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일반 지침의 규제 내용)
 - 적용 범위
 - 트랜스지방을 포함하는 원료, 성분 및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무역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 제조, 거래,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 제품
 - 단독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된 부분경화유
 - 부분경화유와 혼합된 유지
 - 100g 또는 100ml당 트랜스지방산(TFA)이 2g을 초과하는 유지
 - 부분경화유 또는 고함량의 트랜스지방산(TFA)이 포함된 사전포장 식품
 - 라벨링 기준
 - 'TFA-Free', '트랜스지방 0g' 또는 '트랜스지방 없음' 등의 문구 및 표시는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 마케팅 및 광고에서 사용을 금지함
 - 식품의 트랜스지방(TFA) 함량은 필리핀 FDA 라벨 표시 지침에 따라 라벨의 영양 정보 부분에 표기되어야 함
 -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 관련 식품 제조업체의 제품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출처 : PIA, Health advocates celebrate start date of ban on trans fat, 2023.06.19

중국, 분리대두단백 및 유청단백에 대한 건강식품 원료 카탈로그 제정(2023년 10월 1일 발효)

- 중국은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분리대두단백과 유청단백을 추가하여 《건강식품 원료 카탈로그-분리대두단백》, 《건강식품 원료 카탈로그-유청단백》을 발표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 이로써, 중국의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는 총 7개로 증가했으며, 엔자임Q10, 어유, 영지포자분말, 스피루리나, 멜라토닌, 분리대두단백, 유청단백이 이에 해당함
- 주요 내용(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된 분리대두단백과 유청단백 요건)



SPS

이슈 바로가기

원료명	분리대두단백	유청단백
섭취량범위	단백질 6-25g	
적합대상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면역이 저하된 성인	
부적합대상	아동, 소년	
일일 섭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의 1일 단백질 총 권장 섭취량은 60g, 일일 섭취량에 따라 적정량 내에서 섭취 권장 단백질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 권장되지 않음 식물성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금하며, 신부전 환자는 주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 임산부와 수유부는 임상의 및 영양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의 1일 단백질 총 권장 섭취량은 60g, 일일 섭취량에 따라 적정량 내에서 섭취 권장 단백질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 권장되지 않음 동물성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금하며, 신부전 환자는 주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 임산부와 수유부는 임상의 및 영양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권장
효능	면역력 강화	

출처 : people.com.cn, 《保健食品原料目录 营养素补充剂(2023年版)》等四个保健食品目录发布, 2023.06.20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달걀 흰자의 리소짐 가수분해물에 대한 공식 사용 기준 공고(즉시 발효)



SPS

- 대만 보건복지부는 달걀 흰자의 리소짐 가수분해물(hen egg white lysozyme hydrolysate)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식품 원료로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사용 기준 및 라벨 표시기준을 규정하여 공고함
- 근거 법령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의 1 제2항 및 제22조의 1 제10항
- 주요 내용
 - (1) 달걀 흰자의 리소짐 가수분해물
 - (*달걀 흰자의 리소짐을 원료로 추출한 서브틸리신 프로테아제(subtilisin protease)를 가수분해한 후 여과 및 분무 건조한 것을 의미함
 - (*달걀 흰자의 리소짐은 세균 증식 억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됨
 - (2) 사용 기준
 - 적용 식품 : 성인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섭취 기준 : 일일 섭취 한도를 1g으로 제한함
 - (3) 라벨 표시 기준
 - 달걀 흰자의 리소짐 가수분해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본 제품은 성인 대상 제품이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임산부, 수유중인 산모 및 만성 신장 질환 환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 (4) 발효일 : 2023년 6월 8일 즉시 발효
 - (5) 위반 시 조치사항 : 최소 3만 위안에서 최대 3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출처 : 대만 FDA, 公告訂定'食品原料雞蛋白溶菌酶水解蛋白(Hen egg white lysozyme hydrolysate)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 2023.06.08

미국, 주요 식품의 알레르겐 라벨링 표시 기준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5월 「주요 식품 알레르겐의 라벨링 및 교차 접촉에 대한 준수 정책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7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 해당 지침에는 주요 식품 알레르겐과 관련된 필수 표시 요건과 자발적 표시 정보, 알레르겐 교차 접촉(Cross-contact) 발생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 알레르겐 교차 접촉 : 식품 알레르겐이 의도치 않게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내용(주요 식품 알레르겐 표시 요건)



TBT

(1) 주요 식품 알레르겐 표시 요건

- 주요 식품 알레르겐 :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및 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콩, 참깨

분류		표시 요건
필수 표시 요건		포장 식품에 사용된 주요 식품 알레르겐 성분은 "성분 목록 (ingredient list)" 또는 "함유(Contains)" 문구에 명시해야 함
자발적 표시 요건	알레르겐 보충 설명 (Allergen Advisory statements)	교차 접촉으로 인한 알레르겐의 존재 가능성을 알리는 기타 정보 또는 문구를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예시) "알레르겐이 함유될 수 있음(may contain [allergen])", "알레르겐이 사용되는 시설에서 생산됨(produced in a facility taht also uses [allergen])"
	알레르겐 무첨가 표시 (Allergen-free claims)	특정 알레르겐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 (예시) "알레르겐 무첨가(allergen-free)", "00 무첨가(free of 00)" *단, 해당 문구는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함

(2) 알레르겐 교차 접촉 발생 유형

- 알레르겐 교차 접촉 : 식품 알레르겐이 의도치 않게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알레르겐 교차 접촉 발생 유형 : 현행 우수 제조 기준(CGMP) 미준수/부적절한 위생 관리/ 부적절한 제품 취급 방식/ (*HACCP 미준수 등
- (* HACCP : 제조 가공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

출처 : CHEMLINKED, FDA Releases Draft Compliance Policy Guide for Food Allergen Labeling and Cross-Contact, 2023.06.06